예 산 총 칙

2018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8년도 세입 ·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 · 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579,519,108	17,385,573
일반회계	567,119,857	17,013,596
특별회계	12,399,251	371,978
기타특별회계	12,399,251	371,978
의료보호특별회계	2,191,448	65,743
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	914,222	27,427
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	5,726,329	171,790
주택사업특별회계	522,861	15,686
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특별회계	3,044,391	91,332

제 2 조 세입.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 세입.세출 예산 " 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" 해당없음 " 으로 한다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: 해당없음 " 으로 한다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 명시이월조서 " 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,654,849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2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